

전공의(레지던트/인턴) 임용 지침

규정번호	교육수련 - 9	제정일	2024. 3. 1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25.11.20
검토책임자	교육수련부장	규정검토주기	2년
담당부서	교육수련부	검토예정일	2027. 2. 28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를 임용함에 있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본원 전공의 모집 요강에 의한다.

제3조(임용주기) 전공의(레지던트/인턴)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전기모집과 추가모집으로 시행한다.

- ① 상반기 모집 : 본원은 전기모집 대상 기관으로서, 당해연도에 부여된 전공의 정원에 따라 전형형을 통하여 모집하고, 미달된 경우에는 전문진료과와 사전 협의 후 추가모집 할 수 있다.
- ② 하반기 모집 : 전공의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상반기 모집하지 못한 전문진료과를 대상으로 모집 전형 할 수 있으며, 제반 절차는 상반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4조(레지던트 필기시험) ①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전형 계획에 따라 필기시험, 인턴성적 및 면접시험의 가중치와 환산점수로 선발하게 되며, 필기시험 과목, 문항수 및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경우와 미응시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

구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배점	비고
레지던트	내 과	30	15	
	외 과	30	15	
	산 부 인 과	20	10	
	소아청소년과	20	10	
	계	100	50점 만점	

② 필기시험은 태블릿을 기반으로하며, 필기시험의 실시 지역 및 시험장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지에 의한다.

제5조(전공의 임용 배점 기준)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보건복지부 자원 65520-2360호 (2003.07.05.))에 따른다.

1. 인턴 채용기준

가. 배점기준

필기시험(의사국시전환성적)	면접시험	의대성적	비고
60% → 50%	15%	25% → 35%	노원, 의정부병원과 동일

나. 의사국시 성적 평가 기준 (50%)

의사국시 성적 평가 기준 (50%)							
국시성적	성적적용	국시성적	성적적용	국시성적	성적적용	국시성적	성적적용
200	50.0	179	44.8	158	39.5	137	34.3
199	49.8	178	44.5	157	39.3	136	34.0
198	49.5	177	44.3	156	39.0	135	33.8
197	49.3	176	44.0	155	38.8	134	33.5
196	49.0	175	43.8	154	38.5	133	33.3
195	48.8	174	43.5	153	38.3	132	33.0
194	48.5	173	43.3	152	38.0	131	32.8
193	48.3	172	43.0	151	37.8	130	32.5
192	48.0	171	42.8	150	37.5	129	32.3
191	47.8	170	42.5	149	37.3	128	32.0
190	47.5	169	42.3	148	37.0	127	31.8
189	47.3	168	42.0	147	36.8	126	31.5
188	47.0	167	41.8	146	36.5	125	31.3
187	46.8	166	41.5	145	36.3	124	31.0
186	46.5	165	41.3	144	36.0	123	30.8
185	46.3	164	41.0	143	35.8	122	30.5
184	46.0	163	40.8	142	35.5	121	30.3
183	45.8	162	40.5	141	35.3	120	30.0
182	45.5	161	40.3	140	35.0		
181	45.3	160	40.0	139	34.8		
180	45.0	159	39.8	138	34.5		

다. 의대성적 환산기준표 (35%) : 10등급으로 구분, 등급간 1점차

의대성적 (35%)		비고
의대석차(%)	성적적용	
1~10	35	
11~20	34	
21~30	33	
31~40	32	
41~50	31	
51~60	30	
61~70	29	
71~80	28	
81~90	27	
91~100	26	

※ (본인석차/전체인원) × 100 = %

※ 종합석차 미산출자 : 국시성적을 35%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 - (의사국시/2) × 0.35

2. 레지던트 채용 기준

가. 배점기준

필기시험성적	면접시험	의대성적	인턴성적	비고
45% → 40%	15%	0% → 15%	40% → 30%	노원, 의정부병원과 동일

나. 인턴성적 배점기준 (30%) : 등급비율 및 등급배점 (등급간 차이 3점)

등급	등급비율(%)	등급배점	비고
A등급	35%	30	노원, 의정부병원과 동일
B등급	45%	27	
C등급	20%	24	

다. 필기시험 환산점수(40%)

- 총점(50점만점) x 0.8 = 40% 산정

※ 필기시험 성적 총점의 40% 미만(20점)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필기시험 성적 (40%)				비고
필기성적	성적적용	필기성적	성적적용	
50	40.0	34	27.2	
49	39.2	33	26.4	
48	38.4	32	25.6	
47	37.6	31	24.8	
46	36.8	30	24.0	
45	36.0	29	23.2	
44	35.2	28	22.4	
43	34.4	27	21.6	
42	33.6	26	20.8	
41	32.8	25	20.0	
40	32.0	24	19.2	
39	31.2	23	18.4	
38	30.4	22	17.6	
37	29.6	21	16.8	
36	28.8	20	16.0	
35	28.0	20점 이하 불합격처리(과락)		

라. 의대성적 환산기준표 (15%) : 10등급으로 구분, 등급간 1점차

의대성적 (15%)		비고
의대석차(%)	성적적용	
1~10	15	
11~20	14	
21~30	13	
31~40	12	
41~50	11	
51~60	10	
61~70	9	
71~80	8	
81~90	7	
91~100	6	

※ (본인석차/전체인원) x 100 = %

※ 종합석차 미산출자 : 국시성적을 15%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 - (의사국시/2) x 0.15

제6조(지원자격 및 응시제한) ① 레지던트는 인턴 수료 또는 인턴수료 예정자로서 군보요원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자로 제한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근거하여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정원미만 선발 사유) 전공의 모집 전형에서 교실별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②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 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합격자라도 경력이 확인 될 경우

제8조(면접위원 구성) ① 면접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형위원	면접위원		비고
		레지던트	인턴	
위원	병원장, 수석부원장, 진료제1,2부원장, 진료제1,2부장, 기획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수련부과장	병원장, 수석부원장, 진료제1,2부원장, 진료제1,2부장, 기획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수련부과장, 해당교실 과장	병원장, 수석부원장, 진료제1,2부원장, 진료제1,2부장, 기획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수련부과장	

② 면접위원(5인이상) 최소인원 구성이 어려운 경우 병원장은 QI실장 등 보직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면접고사 평가기준은 총점 15점(만점기준), 최소 5점이상, 최고 15점 만점으로 평가 채점한다. 15 ~ 5점까지의 배점은 면접위원회 평가에 의한 배점 최고, 최저 점수 각 1명씩을 배제하고 3명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9조(행정사항) ① 인턴 및 레지던트 지원자 현황 및 합격자 명단 보고는 수련환경평가 본부 전산시스템[전공의전형시스템]에서 전산입력하여 보고한다. 전산입력 후 지원자 현황(합격자 현황)을 공문으로 1주일 이내에 병원협회 전공의 전형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전공의 전형 관련 서류 및 임용 관련된 모든 자료는 향후 5년간 보관한다.

③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레지던트는 필기시험료 1인당 11만원, 인턴은 의사 국가시험성적 전환비용 1인당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원자에게 부담하지 않으며 오리엔테이션 등의 제반 비용은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개정일) 본 지침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승인책임자	병원장 김성우
승인일	2025. 11. 20.